

사업개시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4일
신고인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	상호	전화번호	
	소재지		
신고 내용	사업개시 연월일		
	최초 전력거래일(발전사업자의 경우)		
	사업내용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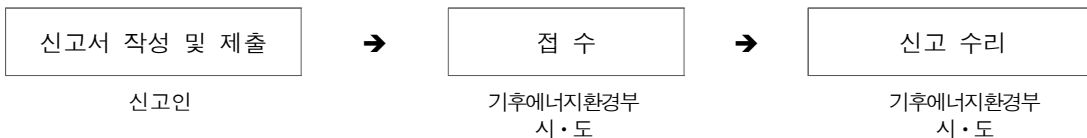
「전기사업법」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) 2. 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(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)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※ 작성방법: 「전기사업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(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